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 2. 20.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2.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4.5.29.)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

○ 추진 필요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규모

現 위탁체	위탁기간	규모	수용인원	운영사업
(사)일촌공동체 (관장: 임명연)	'19.3.1~ '24.5.29	145.54㎡	8명 (관장 1, 과장 1, 팀장 1, 직원 5)	영유아통합 사례관리,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및 양육지원

위치도 (소재지: 마포구 월드컵로 1길 14, 마포한강푸르지오 제P101호)



- 5) 민간위탁기간 : 5년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
합계	610,448	
인건비	432,048	- 직원 8명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운영비	48,000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12,000천원 *4분기
사업비	130,400	- 영유아발달지원사업비: 80,400천원 - 기타사업비: 50,000천원

8)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2024. 3.: 위탁 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 (공개모집)
- 2024. 4.: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선정)
- 2024. 5.: 위탁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운영 개시

9)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사무의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효율성 및 주민 편의 증진 여부 검토

아동관련 복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전문적인 영유아 통합사례관리,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및 양육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1) 제안경위

- 본 동의안은 2024. 2. 1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 2. 2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4.5.29.)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2)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 아동관련 복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전문적인 영유아 통합사례관리,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및 양육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이에 본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2023.12.2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